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업무 민간 대행 근거 신설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32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233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업무 민간 대행 근거 신설(안 제 12조의2 신설)	3
※ 참고자료	13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123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5.
3. 회 부 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업무 민간 대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¹⁾이 교통수단²⁾ 및 여객시설³⁾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할 때 교통약자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⁵⁾이 법정 기준에

1)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5)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정 기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⁶⁾.

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 참고1. 참조

또한,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등⁸⁾을 위한 편의시설⁹⁾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시설주관기관¹⁰⁾이 대상시설에 대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즉,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그 심사에 관해서는 「교통약자법」에서, 교통 관련 외에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 일반적인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와 그 심사에 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유사한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 참고 1. 참조

8)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9)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0)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참고 1. 참조

체계의 제도를 각기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제도 비교 】

구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일반 시설물
근거법률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목적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편의 증진
심사대상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및 여객시설(터미널, 정류장, 역사, 공항, 항만 등)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심사내용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심사시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교통약자 참여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 2020. 12.22.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심사 대행 ※ 2015. 1.28. 신설
근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그런데,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서 「교통약자법」에서는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²⁾,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적합성 심사 업무를 직접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등편의법」에서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준적합성 심사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견청취보다 교통약자의 의견을 책임성을 토대로 충분히 반영하고 유사 제도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④ (생략)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임의절차로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¹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⁵⁾ 개정안은 이 절차를 존치하면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견청취 및 개정안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민간 대행은 모두 임의규정으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재량사항임.

한편, 현행 임의규정인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2건¹⁶⁾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따라서,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의 참여를 통한 이동편의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통약자 관련 민간기관의 의견청취 유지 여부, 심사대행 제도 도입 여부, 각 절차의 성격(임의 또는 의

14)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심사대상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15)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교통약자법」과 달리 행정기관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7724호,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947호,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무), 양 제도 병존 시 합리적 운영방안¹⁷⁾, 의견청취 대상 기관과 심사 대행기관 간의 차별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서는 기준적합성 심사업무의 대행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함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기능성과 안전성을 토대로 기준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민간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에 준하는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심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대행기관에 요구되는 교통 관련 전문성과 교통약자 관련성을 모두 구체화한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실제 그러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임.

17)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였을 경우를 예로 들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는 때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의 요건으로, 전문인력(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 분야 각 1명 포함 6명 이상) 확보, 관련 업무규정 제정, 관련 실적 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¹⁸⁾.

참고로,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대행기간: 2025.1.1.~2027.12.31. 3년간) 1곳임¹⁹⁾.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교통수단·여객시설 면허·허가 요건인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의 공공성·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업무대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 ④ (생략)

1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마다 대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공고하며, 응모 기관이 현 지정 기관 1곳으로 유일하여 연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음. 또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산하 전국 200개 이상 기초센터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상 기준적합성 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음.

2)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3)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 및 설비기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결함요소로 작용하여 해상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준적합성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단체의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특정 단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준적합성 심사업무 대행 단체를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명확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비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 2

관계 기관 의견(2025년 9월)

기관	사유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	【 개정안 반대 】 ○ 교통수단은 복잡하게 연결된 동적 시스템인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차량공학·안전기술 등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어려움 ○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시설 연계, 안전성, 시스템 운영 연계성까지 검증하고,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없이 기준적합성 업무를 대행할 경우 실제 이동 환경의 문제점을 간과할 위험이 큼
한국 해운조합	【 개정안 반대 】 ○ 기준적합성 심사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경우 선박안전 및 설비기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여객선의 감항성, 설비기준 미충족 등 안전운항에 중대한 결함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상안전 사고 발생 우려 ○ 여객선의 안전 관련 설비 및 장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여객선 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 개정안 반대 】 ○ 개정안에서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담보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특정 단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행정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민간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반대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 개정안 수정필요 】 ○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찬성 ○ 다만,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 대행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명확화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자료 : 국토교통부